

[2차 공고] 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

문화체육관광부(한국콘텐츠진흥원), 충청북도 지원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콘텐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육성과 산업으로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<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>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5월 3일

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[2차 공고]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
- 사업목적
 -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의 산업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 ※지역자원+장르=문화콘텐츠
 - 관광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·사업화 촉진
- 사업기간(협약기간)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1. 11. 30

2. 지원내용

- 지원내용 :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콘텐츠 개발지원·지역 전략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
- 지원장르 : 만화, 음악, 애니, 캐릭터, 방송, 실감콘텐츠, 융복합 등 문화콘텐츠
※단, 게임/출판/영화/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
※최종결과물 제출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장르 선택

※융복합 예시

- 만화·웹툰IP+실감콘텐츠(VR/AR/MR, 인터랙티브미디어, 홀로그램, AI등) 기술 활용한 전시콘텐츠, 공연콘텐츠, 교육용 문화콘텐츠 등
- 음악콘텐츠와 ICT기술 결합 프로젝트 / 융복합 공연(신기술 융복합 요소 적용)등

- 지원규모 : 지원금(국비+도비) 3개 과제 내외(과제당 180백만원 내외)
※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용
※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회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

3. 참여요건

- 지역소재 제한 : 청주지역 소재 제외 ※소재 및 지역 명확, 스토리텔링 반영
- 지원자격 : 충청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(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)

- 1)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충북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
- 2)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[서울포함, 참여기업에 한함]
- 주관기업 참여율(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)이 51%이상 이어야 함

- 필수요건

- 콘텐츠 기업은 총사업비(국고+자부담)의 10%이상 현금 자부담 매칭 필수
- 모든 과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가(서비스 개시) 가능한 과제 수행
-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저작권, 영업비밀) 등록 권장
- 일자리창출 : 신규인력 2인 이상 채용 의무(해당 사업의 100%참여율)

- 1)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원칙,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
- 2)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
- 2021넥스트콘텐츠페어(10월~11월 예정) 성과물 전시 활용
- 지원성과 사후관리 : 협약 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
※협약 종료 후,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, 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

- 참가기준
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)가 거점기관(충북과학기술혁신원)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, 5,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
- 신청일 현재 거점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
- 기업 기회균등 지원을 위해 충북에서 시행한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연속참여 제한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, 격년제 참여 가능)
-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추후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임
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, 참여기업)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
- 방송장르 선택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(독립제작사신고필증) 검증된 제작사 대상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거점기관(충북과학기술혁신원), 전담기관(한국콘텐츠진흥원), 타 지원기관 등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
-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,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
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, 참여기업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거점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, 참여기업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

- 1)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
- 2)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,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
- 3) 컨소시엄의 경우 한 기업이라도 해당 될 경우 제한함

4.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

-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용 편성(콘텐츠 개발비) ※예산편성 지침 참고
 - 총사업비(국고+자부담)의 10%이상 기업자부담(현금) 매칭 필수
 -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이 불가함
 -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본 사업의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함
 -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, 참여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위탁거래 불가
 -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에 관련 없는 비용,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예산편성 불가
 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
 - 법인대표이사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% 인정

○ **비목별 편성 기준**

- 인건비 :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(총사업비의 70%까지)
 - ☞ 신규채용 인건비 편성은 지역콘텐츠 기업에서만 가능함
 - ☞ 인건비는 고용의 개념이며, 행정업무(재무회계 등)와 관련 인건비는 편성하지 못함
 - ☞ 지역소재 근무자 인건비 지급 원칙(단, 타지역 본사를 둔 지사 참여의 경우 과제수행업무에 따라 참여 비율 편성, 향후 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)
 - ☞ 프리랜서 등 외부전문가는 일반수용비의 전문가활용비임
 - ☞ 과제수행업무는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.
- 전문가활용비 : **사업화(퍼블리싱 등) 전담 멘토** 수당 필수 편성
- 일반용역비 : 총 사업비의 30%이내 편성 가능
 - ☞ 5천만원 이상 규모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(관련서류 첨부)
- 회계검사 및 정산수수료 편성 (주관, 참여 각각 편성)

총사업비	정산 표준수수료(VAT포함)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510,000원 ~ 657,000원
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	823,000원
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859,000원

-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참고

○ **사업비(지원금 및 자부담금) 사용관리**

- 향후 사업수행 시 지원금은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 관리 및 상기 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 사업비 카드 발급사용
- 자부담은 해당 통장에 입금,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**공고 및 접수기간 : 2021. 5. 3(월) ~ 5. 24(월) 17:00까지 (e나라도움)**

※접수 시간 외 접수 불가,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신청방법 :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**

-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접속(www.cbist.or.kr)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(www.gosims.go.kr) 통해 신청 ※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(1670-9595)

- 1) e나라도움 회원가입 (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)
- 2) **과제조회 : 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공모현황 검색 공모확인**
[2차 공고]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
- 3)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(준비),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
 ※e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

○ 제출서류 목록

- ☞ ★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“제출 폴더” 구조에 따라 파일 정리(통합본 및 개별버전)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: 50MB 이하 [파일명 : 주관기업명_과제명(키워드).ZIP]
- ☞ 모든 제출서류 2021년 확인

구분	제출서류	참조사항	비고
▶통합본 (한글hwp, PDF 모두 제출)			
▶사업수행 (과제신청서류)		평가기초	필수
1	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(표지, 요약 제외 15페이지 이내)		한글,PDF (모두제출)
2	사업비 산출내역서		한글
3	용역(위탁)사업계획서		한글
4	참여인력 현황(이력사항) 및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		한글,Excel
▶지원사업 신청기준 확인 서류 (주관기관/ 참여기관 각 1부)		평가기초	필수
5	수행기업 소개서		한글(hwp)
6	정부지원 수혜실적		한글(hwp)
7	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		PDF
8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자필서명 필수)		PDF
9	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※ 미제출·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음		PDF
10	▶ 사업자부담금 약약서	지원조건 확인	필수(PDF)
11	▶ 사업자등록증 (주관기관/ 참여기관 각 1부)	소재지확인	필수(PDF)
12	▶ 중소기업확인서 (주관기관/ 참여기관 각 1부) 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	참가 자격조건	필수(PDF)
13	▶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주관기관/ 참여기관 각 1부) ※미제출·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음	일자리창출 확인	필수(PDF)
14	▶ 최근 3년간 재무제표(2018년~2020년) (주관기관/ 참여기관 각 1부)	기업분석	필수(PDF)
15	▶ 그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※스토리, 시청각자료, 데모콘텐츠, 사업화가능성 시군사전 협의 등 증빙자료	-	선택

※제출 서류 누락 할 경우 심사 탈락,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6.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

○ 선정절차 안내



○ 평가내용

- **적정성검토** :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, 지원조건 부합 등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
- **서면·발표평가** :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, 제안PT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
- **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** :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(과제수, 예산조정)

○ 선정평가 기준(안)

평가항목	세부지표	내용	배점
과제기획 및 내용 (35점)	이해도, 완성도	○지역특화콘텐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과제 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는가? ○과제 기획이 뚜렷하고, 콘텐츠 구성이 치밀한가?	5
	독창성	○기존 콘텐츠와 차별화 되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?	5
	기획력(현실성)	○과제의 목표(결과물)이 명확하고, 협약기간 내 과제가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, 현실적, 타당한 기획인가?	5
	스토리 개발	○기 완성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가?	5
	대중성(상업성)	○본 과제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갖추었는가? ○콘텐츠 활용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하며, 흥행성 및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가?	10
	경쟁력	○기존시장의 타 콘텐츠와 비교하여 흥행가능성 및 이슈성이 높은가?	5
기대성과 사업성 (30점)	경제적 성과 유통 구체성	○본 과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? ○세부적인 유통계획(플랫폼 활용, 판매, 방영 등)이 구체적인가?	10
	지역 기여도 사회적 파급력	○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? ○지역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가?	10
	사업화 실현	○사업화·마케팅 계획이 타겟 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적합한가? ○타 산업(관광업 등) 연계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한가?	10
	수행기업 및 참여인력 전문성	○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, 기획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? ○유사 프로젝트 참여하여 성과 및 제작 역량이 있는가?	5
수행역량 및 사업관리 (20점)	수행관리체계	○본 과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? (세부 분야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)	5
	사업화 네트워크	○사업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및 타 산업연계 계획방안은?	5
	재무건전성	○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* AAA~A-:5점, BBB+~BBB-:4점, BB+BB-:3점, B+~B-:2점, C~: 1점	5
사업비의 적정성 (10점)	사업비 편성	○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? ○사업비 편성내역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가?	5
	사업비 조달계획	○자부담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?	5
사회적 가치 (5점)	일자리 창출	○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* 3명 이상 : 4점, 2명 : 3점	4
	성폭력 근절	○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* 근절계획(교육 및 서약서) 제출 : 1점, 미제출 : 0점	1
합계(100점)			100

※상기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동 될 수 있음

7. 지원금 지급

-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 - 1차 지원금 :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(70%)
 - 2차 지원금 :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(30%)

구분	중간평가 점수	2차 지원금 지급	비고
합격	70점 이상	2차 지원금(30%) 지급	과제 지속 수행
불량	70점 미만	과제실패 및 탈락	국고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

8. 추진일정(안)

구분	내용
사업 공고 및 접수	○ 2021. 5. 3(월) ~ 5. 24(월) 17:00 (e나라도움 접수)
적정성검토	○ 2021. 5. 24(월) ~ 5. 25(화) 예정
서면·발표평가 및 종합심의	○ 2021. 5. 28(금) ~ 6. 2(수) 예정 *적정성검토 후 통과기업대상 발표일정 통보 *평가일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PPT자료 미리 준비
수정계획서·협약체결	○ 2021. 6월 1주 ~ 6월 2주 예정

* 평가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

9. 기타사항

-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,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, 「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」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,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
 - ※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, 규정, 지침에 따름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, '신용조사 정보등록'안내에

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함.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향후 콘텐츠 사업화 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·군과 유관기관 활용의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, 평가시 평가자료로 참고할 수 있음
- 동일한 내용으로 거점기관(충북과학기술혁신원), 전담기관(한국콘텐츠진흥원) 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,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
-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.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거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
-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충청북도,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
- 예산 편성 시,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, 협약 시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)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
- 평가 최종선정결과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
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

2021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.

- ☞ **국고보조금 예치** : 국고보조금은 '통합예약기관(한국재정정보원)'에 예치하여,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, 집행 전 집행내역 등록
- ☞ **사업자부담금 집행** :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,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(세목별 비율 적용)
 - * **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**
- ☞ **사업비 계좌 관리** :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가능한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,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, 원금이 보장되며,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
 - * **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,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**

[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]

-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
 - 제23조(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※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
- ※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

- * 예산산출내역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사업비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가예산 산출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10. 문의처

- 사업문의: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문화콘텐츠부
☎043-210-0852 / jebiflower01@cbist.or.kr
- 홈페이지 : www.cbist.or.kr / www.gosims.go.kr
- 온라인 접수문의 : e-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

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